# 제80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

의 결 사 항

의안번호	제2016-통신80-235호
의결일자	2016. 11. 8.
공개여부	공 개

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

제출자	위원장
제출일자	2016. 11. 8.

#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

<2016. 11. 8.(화), 의결사항, 불법정보팀>

# 1. 제안사유

○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불법정보 등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하기 위함.

# 2. 의결주문

○ 심의번호 불법-16-80-0001~3701(3,701건)에 대하여, 소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름.

# 3. 안건개요

○ 심의대상 3,701건은 '사행행위', '금융투자 관련', '불법 할인 자금 융통', '사생활 조사 행위', '개인정보 관련' 정보임.

구분	사행행위	금융투자 관련	불법 할인 자금 융통	사생활 조사 행위	개인정보 관련	하 아 없	Я
건수	2,982	14	52	28	616	9	3,701

### 4. 주제별 안건

위반주제	개인정보 관련	
심의번호	불법-16-80- <b>3077~3692</b> (616건)	
주요내용	▲타인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내용의 정보 ▲타인명의 통장을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	
신 고 인	금융감독원 2건, 일반인 438건, 모니터 176건	

#### 가. 문제내용

- 심의번호 불법-16-80-3077~3254(178건)은 사이트 게시글을 통해 대출디비(DB), 신용카드 트랙, 불법적으로 획득한 아이핀 및 각종 사이트 아이디(ID)를 판매하며 전화번호, 메일주소, SNS 아이디 등 판매자 연락처를 게시하고 있음.
- 심의번호 불법-16-80-3255~3692(438건)은 개인·법인통장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한다는 내용으로, 거래방법을 소개하며 전화번호, SNS 아이디 등의 연락처를 게시하고 있음.
  - 동 정보는 【붙임】과 같이 국내 및 해외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.

[심의번호별 정보내용]

심의번호	정보내용
불법-16-80- <b>3077~3254</b> (178건)	개인정보 판매
불법-16-80- <b>3255~3692</b> (438건)	타인 명의거래(대포통장·대포차·대포폰)

○ 동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 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과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,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며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을 위반한 것이므로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제1항제9호 등을 적용·제시하였음.

#### 나. 적용조항

○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의7 제1항제9호 및「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」제7조제4호

#### ※ 참고법률
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3조(개인신용정보의 이용), 제50조(벌칙), 「전자금융거래법」제6조(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) 및 제49조(벌칙)

####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
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2. "개인신용정보"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.
- 제33조(개인신용정보의 이용)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(고용관계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
  - 2.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(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)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(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  - 3. 제32조제4항 각 호의 경우
  -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**제50조(벌칙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5. 제33조를 위반한 자

#### 「전자금융거래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0. "접근매체"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 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.
  - 가.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
  - 나.「전자서명법」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
  - 다.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
  - 라. 이용자의 생체정보
  - 마.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
- 제6조(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)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(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)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
  - 2. <u>대가를 수수(授受)·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</u>위 또는 보관·전달·유통하는 행위
  - 3. <u>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</u> 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·전달·유통하는 행위
  - 4.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
  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
- 제49조(벌칙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
  - 2.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<u>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</u> 또는 보관·전달·유통한 자
  - 3.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
  - 4.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<u>알선행위를 한 자</u>

#### 다. 확인사항 및 검토의견

정보내용	발생장소	의결주문	심의번호
개인정보 판매	국내서버	삭제	불법-16-80- <b>3077~3227</b> (151건)
	해외서버	접속차단	불법-16-80- <b>3228~3254</b> (27건)
타인 명의거래	국내서버	삭제	불법-16-80- <b>3255~3668</b> (414건)
	해외서버	접속차단	불법-16-80- <b>3669~3692</b> (24건)

붙 임 : 심의대상 목록 1부. 끝.